

의안번호	2213905
의 퇴 인	김종민의원
회 답 일	2026.1.13.
추계번호	25B5864

행정수도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함.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17조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전계획 중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이전대상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주요 헌법기관의 사무 책임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18조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수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관리청장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1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수도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관리청장은 제65조제4항에 따른 행정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6항)	의무규정
		관리청장은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도지사 및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4항)	재량규정
5	안 제20조 (기본계획의 수립)	관리청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이전대상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 방안 8.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관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21조 (개발계획의 수립)	관리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5. 교통처리계획 6. 도시문화계획 7. 경관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3. 재원조달계획 14.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함(제5항)	의무규정
7	안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¹⁾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함(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24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함(제1항)	의무규정
		관리청장은 제70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8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9	안 제25조 (토지등의 수용 등)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제5항)	의무규정
10	안 제30조 (위원회의 설치)	행정수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위원회를 둔다	의무규정
11	안 제3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특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11. 제48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2. 제70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2	안 제32조 (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2항) 1. 국무총리, 국무사무총장,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13	안 제35조 (소위원회)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14	안 제39조 (자문위원회)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5	안 제42조 (관리청의 설치 등)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둠(제1항)	의무규정
		관리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함(제2항)	의무규정
		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제3항)	의무규정
16	안 제43조 (관리청장의 업무)	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2. 제18조에 따른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 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4.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5.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제27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8. 제28조에 따른 준공검사 9. 제48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영 10. 제5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11. 제65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 12. 제68조에 의한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에 의한 사무 13. 위원회 사무의 지원 14. 행정수도건설사업의 총괄·조정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관리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6. 행정수도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7. 예정지역에서 행정수도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	안 제45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 또는 관리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8	안 제46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48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20	안 제49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4. 제53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의무규정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행정수도에 입지할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4. 제53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5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7. 제59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8.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 9. 제7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필요한 비용 10. 제76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1. 제77조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12. 제78조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13. 그 밖에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21	안 제51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 및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관리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시 및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22	안 제52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세종특별시장 또는 세종특별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관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53조 (차입금)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4	안 제57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5	안 제58조 (주변지역지원사업)	관리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재량규정
26	안 제59조 (관련 대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수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관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2항) 관리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27	안 제61조 (손실보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8	안 제7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관리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제1항) 관리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재량규정
29	안 제77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0	대학에 대한 지원)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 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안 제78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관리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음.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함(제6항)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의무규정
		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1) 안 제23조(인·허가등의 의제)

- ①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

-
- 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2.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7.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 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7.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현황
1	안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3	안 제17조(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4	안 제18조(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5	안 제20조(기본계획의 수립)	
6	안 제21조(개발계획의 수립)	
7	안 제23조(인·허가등의 의제)	
8	안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9	안 제25조(토지등의 수용 등)	
10	안 제42조(관리청의 설치 등)	
11	안 제43조(관리청장의 업무)	
12	안 제45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13	안 제46조(여론의 수립)	
14	안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15	안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6	안 제51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17	안 제5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18	안 제53조(차입금)	
19	안 제57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20	안 제58조(주변지역지원사업)	
21	안 제59조(관련 대책의 수립)	
22	안 제61조(손실보상)	
23	안 제7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24	안 제77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25	안 제30조(위원회의 설치)	• (미대상) 현행 관련 사업 시행중 － 위원회: 2024년 연 3회(4.8백만원 소요) － 공동캠퍼스 조성: 2026년 예산 900백만원
26	안 제3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27	안 제32조(위원회의 조직)	
28	안 제35조(소위원회)	
29	안 제39조(자문위원회)	
30	안 제78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 상세사유

- 제정안은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 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 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는 점, 국회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국회세종의사당(분원)보다 이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사업예산 외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대통령 제외)을 이전대상으로 하되, 외교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²⁾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분원³⁾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될 예정임

2)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개요

- 부지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 면적 : 150,000㎡
- 주요 시설
 -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업무시설 및 국민소통시설 등 연면적 40,102㎡ 규모
 - * 향후 이전 규모에 따라 사업비 및 규모 등 세부 내역 변동 가능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3,846억원
 - 사업기간 : 2023년~2027년(2030년 변경예정)
 - 2023~2026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현액	예산	현액	예산	현액	예산	현액
합 계	300	300	1,020	1,320	4,520	5,659	24,000	29,224
사업추진비	-	-	20	20	20	20	10	10
일반연구비	300	300	-	300	1,000	1,139	-	812
건설보상비	-	-	-	-	-	-	8,684	8,684
기본조사설계비	-	-	1,000	1,000	3,300	4,300	-	4,212
실시설계비	-	-	-	-	-	-	15,306	15,306
시설부대비	-	-	-	-	200	200	-	200

자료: 행복청 제출자료

3) 세종의사당 건축 사업개요

- 부지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 면적 : 631,000㎡(약 19.1만평)
- 이전 범위
 - 주요 소관부처 세종시 소재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

- 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하여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기관들이 추가로 이전하게 될 경우, 예정지역 고시, 이전계획 수립 등 제정안에 따른 이전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관련 재정사업이 추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2] 현행법과 제정안의 이전대상 기관 비교

현행법	제정안
「인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대통령 제외)(제2조제1호) ⁴⁾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제16조) ⁵⁾ -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제16조의2) ⁶⁾	주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안 제2조제2호) ⁷⁾
「국회법」 제22조의5 ⁸⁾ : 국회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 국회사무처 : 기능별로 서울과 세종에 분산 배치
- 국회도서관 : 서울과 세종(분관)에 동시 배치
-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 전부 이전
- 연도별 예산현황: 2019~202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예산	현액	예산	현액	예산	현액	예산	현액
합 계	1,000	1,000	1,000	2,000	12,727	14,727	-	14,727
토지매입비	-	-	-	-	-	-	-	-
일반연구비	-	-	-	-	-	2,670	-	2,670
기본설계비	1,000	1,000	1,000	2,000	11,727	12,057	-	12,057
실시설계비	-	-	-	-	1,000	-	-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예산	현액	예산	현액	예산	현액	예산	현액
합 계	35,000	47,057	35,000	82,057	35,000	117,057	95,640	212,357
토지매입비	35,000	35,000	35,000	70,000	35,000	103,500	72,862	176,362
일반연구비	-	-	-	-	-	1,500	-	1,160
기본설계비	-	12,057	-	12,057	-	12,057	22,778	34,835
실시설계비	-	-	-	-	-	-	-	-

자료: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제출자료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5)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 현행법과 제정안의 유사조문 비교

연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1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안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2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안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3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안 제17조(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4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안 제18조(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5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20조(기본계획의 수립)
6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안 제21조(개발계획의 수립)
7	제22조(인·허가등의 의제)	안 제23조(인·허가등의 의제)
8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안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9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안 제25조(토지등의 수용 등)
10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안 제30조(위원회의 설치)
11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안 제3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12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안 제32조(위원회의 조직)
13	제33조(소위원회)	안 제35조(소위원회)
14	제35조(자문위원회)	안 제39조(자문위원회)
15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안 제42조(관리청의 설치 등)
16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안 제43조(관리청장의 업무)
17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안 제45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18	제42조(여론의 수렴)	안 제46조(여론의 수렴)
19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안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20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21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안 제51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22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안 제5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2017.10.24.>
6. 성평등가족부
- 6)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7) 2. “예정지역”이란 제17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이전과 그
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8) 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分院(分院)으로 세종
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연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23	제47조(차입금)	안 제53조(차입금)
24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안 제57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25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안 제58조(주변지역지원사업)
26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안 제59조(관련 대책의 수립)
27	제56조(손실보상)	안 제61조(손실보상)
28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안 제7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29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안 제77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30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안 제78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 그런데 제정안에 따라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등(안 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이 확정된 이후 예정지역 기초조사(안 제10조 및 제11조), 기반시설의 설치(안 제24조), 토지수용 및 보상(안 제25조·제61조), 위원회 운영(안 제30조~제32조·제35조·제39조), 관리청의 업무 시행(안 제42조·제43조·제45조), 특별회계의 운영(안 제48조·제49조·제53조), 공유재산 사용 등(안 제51조·제52조),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안 제58조·제59조·제61조), 조세 등 감면(안 제23조·제57조), 사업시행(안 제46조·제58조·제59조·제76조·제77조) 등의 관련 재정사업이 실시될 것이나, 현시점에서는 기관별 이전계획, 예정지역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안 제21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안 제43조(관리청장의 업무), 안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7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안 제78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기 실시된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음

[표 3] 현행법과 제정안 조문별 기 실시(중)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행복청)		사업년도	사업비 (백만원)	현행법 법적근거	제정안 관련 조문
광역도시계획 수립		2019	666	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안 제18조 (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
		2020	371		
		2021	1,365		
		2022	320		
		2023	288		
공동구 설치		2014	100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안 제24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2015	175		
		2016	460		
광역교통시설 건설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2022	100		
		2023	4,543		
		2024	2,070		
		2025	2,975		
		2026	5,741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2022	5,000		
		2023	2,500		
		2024	300		
		2025	100		
		2026	100		
회덕IC 연결도로		2022	16,159		
		2023	7,605		
		2024	14,500		
		2025	4,968		
		2026	9,350		
종합사업관리		2022	1,882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안 제43조 (관리청장의 업무)
		2023	1,882		
		2024	1,318		
		2025	2,438		
		2026	2,487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2022	5,572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49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2023	5,058		
		2024	1,762		
		2025	5,821		
도담어진지구대 건립		2022	3,582		
		2023	1,313		
		2024	371		
세종경찰서 청사건립		2022	100		
		2023	17,760		
		2024	1,000		
		2025	427		
		2026	19,513		

사업명(행복청)	사업년도	사업비 (백만원)	현행법 법적근거	제정안 관련 조문
세종경찰특공대 청사건립	2022	—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43조 (관리청장의 업무) 안 제49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2023	100		
	2024	100		
	2025	714		
	2026	2,560		
평생교육원 건립	2022	175		
	2023	14,951		
	2024	14,554		
	2025	11,335		
과학문화센터 건립	2022	—		
	2023	100		
	2024	649		
	2025	1,285		
	2026	1,347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2	502		
	2023	9,381		
	2024	6,423		
	2025	30,016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2	11,204		
	2023	5,823		
	2024	6,400		
	2025	16,704		
	2026	5,749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2	588		
	2023	3,959		
	2024	6,969		
	2025	11,670		
	2026	15,514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2	—		
	2023	500		
	2024	3,137		
	2025	1,295		
	2026	18,328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2022	—		
	2023	200		
	2024	100		
국립박물관지 건립	2022	85,482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21조 (개발계획의 수립) 안 제49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2023	38,760		
	2024	12,115		
	2025	57,882		
	2026	49,195		

사업명(행복청)	사업년도	사업비 (백만원)	현행법 법적근거	제정안 관련 조문
자족기능유치지원	2022	912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안 제43조 (관리청장의 업무)
	2023	319		
	2024	552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	2015	1,570	제63조의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안 제7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2016	8,430		
	2017	5,945		
	2018	8,982		
세종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2022	—	제63조의9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안 제49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2023	964		
	2024	646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78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025	1,263		
	2026	900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2025	158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안 제43조 (관리청장의 업무)
	2026	557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